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6536
------	------

제출일 : 2022. 11. .
제출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회계정보과장)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소속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기르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목적사업운영을 위한 장학금 조성

2.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 및 제8조(출연금)

3. 출연금액: 10억 원

(단위:천원, %)

2022년 예산액(A)	2023년 요구액(B)	증감액(C=B-A)	증감률(D=C/A)
1,000,000	1,000,000	0	0

4. 참고사항

- 가. 출연 심의요구서: [붙임1]
- 나. 관계법령: [붙임2]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	-----------------

주관부서	회계정보과 출납담당	담당과장	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전화
		이은숙	최영미	도경순	231-0683

기관명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대상	<input type="radio"/> 대표: 이사장 장세철 <input type="radio"/> 일반현황 -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 규모: 36,078,936,028원(2022.10.31.기준) - 사업: 기본재산 운용소득으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장학 등)								
출연사업비	<input type="radio"/> 출연예정금액: 1,000,000천원 <input type="radio"/>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2023 1~12월	1,000,000	1,000,000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교육비 특별회계	기타
			1,000,000				1,000,000		
필요성	<input type="radio"/>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마련								
근거·법령	<input type="radio"/>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input type="radio"/>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 및 제8조(출연금)								
소관부서 의견	<input type="radio"/> 지역과 국가발전을 책임질 인재의 양성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됨								
첨부자료	1.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재단 사업계획서 2. 출연기관 현황								

1-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재단 사업계획서

사업명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	구분	출자	10억(교육비특별회계)
주관부서	회계정보과		출연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과 국가발전을 책임질 인재 양성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금 조성

□ 인재육성장재단 재산조성 및 집행현황

○ 재산조성현황

(2022.10.31.현재, 단위: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조성 재원	교특회계 출연금	1,066,160	500,000	500,000	6,586,000	6,575,000	7,300,000	7,428,900	1,000,000	1,000,000	31,956,060
	외부 기탁금	154,180	115,684	82,356	245,077	213,995	380,264	463,790	231,670	124,910	2,011,926
	운용소득 (이지수입)	11,600	39,533	37,820	89,407	290,017	364,273	518,889	414,173	345,238	2,110,950
	계	1,231,940	655,217	620,176	6,920,484	7,079,012	8,044,537	8,411,579	1,645,843	1,470,148	36,078,936

○ 집행현황

(2022.10.31.현재, 단위:천원)

운영사업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장 학 사 업	장학금	5,000 (7명)	45,060 (131명)	47,000 (37명,14교)	190,000 (354명,1교)	371,010 (550명,16교)	375,350 (528명,2교)	577,984 (871명,1교)	438,954 (600명,2교)	199,100 (251명,1교 1기관)	2,249,458 (3,419명,37교, 1기관)
	합승연구 동아리 등 지원		63,981 (5교,6개)	20,000 (3교,5개)							83,981 (8교,11개)
	소계=①	5,000 (7명)	109,041 (131명, 5교,6개)	67,000 (37명, 17교,5개)	190,000 (354명,1교)	371,010 (550명,16교)	375,350 (528명,2교)	577,984 (871명,1교)	438,954 (600명,2교)	199,100 (251명,1교 1기관)	2,333,439 (3,419명,45교, 1기관,11개)
운영비=②		142	2,913	2,019	18,979	19,811	11,074	36,247	7,656	4,945	103,786
합계=①+②		5,142	111,954	69,019	208,979	390,821	386,424	614,231	446,610	204,045	2,437,225

□ 2023년 출연금(10억) 재원

- 법인카드 사용기금 5억 2,500만원, 금고 협력사업비 4억 7,500만원

□ 2023년도 장학사업 계획(안)

사업명	사업내용
①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	대구미래교육 분야별(4개 영역) 우수자 또는 성장가능한 자를 선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②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저소득층 장학금)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적우수 중·고 학생
③나침반 장학금 (SOS장학금)	갑작스런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학생
④사랑의 고리 맺기 지원	사랑의 고리 맺기(독거학생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생
⑤이음 장학금 (학업중단 위기극복 학생 장학금)	학교생활 부적응 및 불우 가정환경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한 초·중·고 학생
⑥선행·봉사학생 장학금	사회적 귀감이 되는 선행·봉사활동 등으로 알려진 초·중·고 학생
⑦특기생 장학금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과학, 예술, 체육, 문학)
⑧아름드리 장학금 (인문계고 3학년 저소득층 석식 지원금)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소외계층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급식(석식)비 지원
⑨기능경기대회 훈련생 장학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기능경기대회 2학년 훈련 우수 학생 중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소외 계층 지원
⑩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취업 장학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학생 중 해외에 취업이 된 우수 학생
⑪김홍진 장학금	경북공업고등학교에서 선발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교입학 예정 학생
⑫유치원생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가정의 유치원생 중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소외 계층 지원

1-② 출연기관 현황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률: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설립허가) · 조 례: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53)231-0683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주요연혁	· 2013.12.20.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1.10.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대구시교육청 직원 겸임)	3명	0명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이사장	장세철	(주)고려건설 회장 2018.12.10.~2022.12.09.(4년) ※이사장취임:19.2.15.
주요기능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재산조성현황 2022.10.31.기준 (단위: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액	31,956,060	(①)
	기탁 및 운용소득	4,122,876	(②)
	계	36,078,936	(③=①+②)
	사업집행액	2,437,225	(④)
	잔액	33,641,711	(③-④)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